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7

발의연월일: 2020. 6. 12.

발 의 자:박 정·남인순·김경만

맹성규・양정숙・강득구

이낙연·송옥주·김용민

서영교 · 한병도 · 권인숙

윤후덕 • 전해철 • 백혜련

유준병·박성준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맹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 정원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가맹사업거래분 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,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·도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.

그런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각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,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16조 등).

법률 제 호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22조제4항 중 "한다"를 "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, 시·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·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"로 한다.

제23조제5항 중 "공정거래위원회 및 시·도에"를 "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, 시·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·도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	제16조(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
의회의 설치) ①·② (생 략)	의회의 설치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
	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
	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
	여 고시할 수 있다.
제22조(조정의 신청 등) ① ~ ③	제22조(조정의 신청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	4
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	
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	
사자에게 통지하여야 <u>한다</u> .	<u>하며 조정</u>
	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
	<u>회에, 시·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</u>
	거래위원회 및 시·도에 이를 알
	<u>려야 한다</u> .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조정 등) ① ~ ④ (생	제23조(조정 등) ① ~ ④ (현행
략)	과 같음)
⑤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	⑤
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	
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	
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

에 따라 <u>공정거래위원회 및</u>
시·도에 조정의 경위, 조정신청
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
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
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
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
하여야 한다.

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
정거래위원회에, 시·도 협의회의
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·도
<u>에</u>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⑥・⑦ (생략)